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162
----------	------

2021년 3월 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이병도 의원(찬성자 19명)
- 나. 발의일자 : 2021년 2월 5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2월 9일
- 라. 상정결과 :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 3월 3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병도 의원)

가. 제안이유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이 2018년 개정에 따라, ‘취약예술계층’을 본 조례안에서 인지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과 문화 예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각종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주요내용

- 조례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 7조제5호 신설).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과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취약예술계층”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창작준비금 등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지원 기준·방식을 개선하고자 2018년 10월 신설되었음.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예술인이나 그 부모·배우자 또는 제3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정부는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을 만들고 지난해 5월 ‘예술인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민생고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바, 안 제2조제2호 규정을 통해 위기상황을 넘어 거의 절멸적 상황에 내몰렸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지난해 서울시는 예술인의 긴급지원을 하고자 총 4번의 추경을 통해 총 8개 사업 275억 9백만원을 편성하는 등 더 많은 예술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2020년 추경으로 편성된 예술가 지원 사업 현황>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
합계			275억 9백만원
1	문화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	5억원
2	문화예술과	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45억원
3		공연업 긴급 회생 지원	50억원
4		코로나 관련 대학로 공연장 방역	1억2천만원
5	디자인정책과	공공미술 작가 지원 및 활성화	133억 8천9백만원
6		서울디자인산업 지원	20억원
7	박물관과	신진미술인 지원을 통한 일상전시	15억원
8	서울도서관	지역 출판·서점 지원	5억원

언론보도에서는¹⁾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예술가, 예술단체, 공연장, 공연기획사 등의 실질적인 조사나 검토 없이 지원이 이루어져 사업내용이 서로 중복되거나, 기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다시 지원을 받는 등 예술계 병폐가 예술가들의 경쟁력을 오히려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었고,

현실을 무시한 정책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비난이 있었으므로 이를 반면교사 삼아 안 제7조제5호에 신설하고자 하는 취약예술

1) '코로나19 예술인 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지원'이라는 우려, YBS뉴스통신 2020.4.29.(<http://www.ybsn.tv/news/articleView.html?idxno=11382>)

계층의 대상이나 사업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코로나19 이후 예술계의 자립을 위해서라도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세분화된 정책 마련과 예술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만들어 가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집행부에서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의 정의가 상위법인 「예술인 복지법」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동사업이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갖는 대규모 재정사업일 경우 법적 근거의 부재, 사전 중앙부처(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누락된 상황 등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로 수정의견이 아래와 같이 있었음.

<안 제7조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예술인의 복지 증진 사업 등)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7조(예술인의 복지 증진 사업 등)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예술인의 복지 증진 사업 등) ----- ----- ----- ----- 1. ~ 4. (개정안과 같음)
<u><신 설></u>	5.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 다만, 이 경우 대상 및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 다만, 이 경우 대상 및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6. (개정안 제6호와 같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지영	02-2180-8115

의안번호
2162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p>주요내용</p>	<p>이병도 의원 외 19명</p>	<p>2021. 2. 5.</p>	<p>문화체육관광위원회</p>
<p>추진경과</p>	<p>○ 2021. 2. 5. 조례안 발의(이병도 의원 대표발의)</p>		
<p>부 서 검 토 의 견</p>	<p>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p>		
<p>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p>	<p>[종합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 취약예술계층 신설 규정은 상위법에 재정되어 있는 법적 정의를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적절함 ○ ‘제7조(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등) 5.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사업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 규정중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상위법 근거 부재, 사회보장제도 신설시 중앙부처(보건복지부) 협의절차 누락, 재정부담비용 추계 부재 등의 사유로 삭제하고 법적근거가 명확한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으로 한정함이 타당 - 제7조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5.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 → 5.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 <p>[세부 검토 의견]</p> <p>① [제2조 ‘취약예술계층’ 신설]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 취약예술계층 신설 관련 : 취약예술계층의 정의가 법적성격이 유사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2에 문화체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상위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음.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2</p> <p>제2조의2(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예술인이나 그 부모·배우자 또는 제3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p> </div>		

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

◆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취약예술계층의 기준)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과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의 기준을 만족한 자를 말한다.

1. 신청인 및 신청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인의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경우

② [제7조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신설] 관련

- 동 조례 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예술인 복지 증진사업으로 <5.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을 신설하면서 사업의 대상 및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위임하였음
-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의 정의가 상위법으로 볼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및 시행령에 부재함
- 또한 동 사업이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갖는 대규모 재정사업일 경우 **법적근거의 부재, 사전 중앙부처(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누락된 상황**이며 **사업의 범위를 규칙으로 위임했다는 사유로 비용 추계가 누락되어 있어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임**

◆ **사회보장 기본법 제26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 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대응방안	○ 세부 검토내용 등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방문 설명					
상임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향후계획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문화예술과</td> <td style="width: 25%;">팀장</td> <td style="width: 25%;">홍우석 (☎2133-2552)</td> <td style="width: 25%;">담당</td> <td style="width: 20%;">김유빈 (☎2133-2553)</td> </tr> </table>	문화예술과	팀장	홍우석 (☎2133-2552)	담당	김유빈 (☎2133-2553)
문화예술과	팀장	홍우석 (☎2133-2552)	담당	김유빈 (☎2133-2553)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의 정의가 상위법인 「예술인 복지법」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로 삭제하고자함.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162
----------	------------

2021년 3월 3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의 정의는 상위법인 「예술인 복지법」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동 사업이 사회보장 제도의 성격을 갖는 대규모 재정사업일 경우 법적 근거의 부재, 사전 중앙부처(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누락된 상황 등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음.

2. 수정 주요골자

-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제5호).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5호 중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을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으로 한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예술인의 복지 증진 사업 등) ----- ----- ----- -----.	제7조(예술인의 복지 증진 사업 등)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u> 다만, 이 경우 대상 및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 4. (개정안과 같음) 5. <u>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u> 다만, 이 경우 대상 및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현행 제5호와 같음)	6. (개정안 제6호와 같음)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 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2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뜻한다.

제7조의 제목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등)”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다만, 이 경우 대상 및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술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2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뜻한다.
<p>제7조(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등)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생략) <p><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생략) 	<p>제7조(사업)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현행과 같음) 5.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다만, 이 경우 대상 및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현행 제5호와 같음)